

## 국졸 병역소집 면제자를 위한 직업훈련 계획

노동부는 81년10월20일자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인 병역 잉여자원 처리대책의 실천계획으로 국졸 병역소집 면제자를 위한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同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국졸

자의 직업훈련 입소실적이 별표와 같이 부진한 실정으로 국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에 더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회원 業體에서는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 국졸 병역면제자 직업훈련 실시현황

(단위: 명)

훈련기관별 시도별	계		농 촌 직 업 훈 련 소		사 업 내 직 업 훈 련 소	
	훈 련 능 력	입 소 자	훈 련 능 력	입 소 자	훈 련 능 력	입 소 자
계	18,287	1,650	3,766	878	14,521	772
서울	7,135	494	1,368	118	5,767	376
경기	2,162	150	270	55	1,892	95
강원	646	119	222	67	424	52
충북	421	140	192	125	229	15
충남	760	303	420	303	340	—
전북	523	189	330	147	193	42
전남	444	35	270	35	174	—
경북	623	92	268	16	355	76
경남	2,113	17	155	12	1,963	5
제주	72	—	72	—	—	—
부산	1,773	6	204	—	1,574	6
대구	347	2	—	—	347	2
인천	1,263	103	—	—	—	—

## 공산품 사후관리 지도계몽

工振廳에서는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믿고 사는 풍토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

직도 일부 業體가 不法不良工産品을 유통하여 國民消費生活에 불신과 불만을 초래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민합동의 工産品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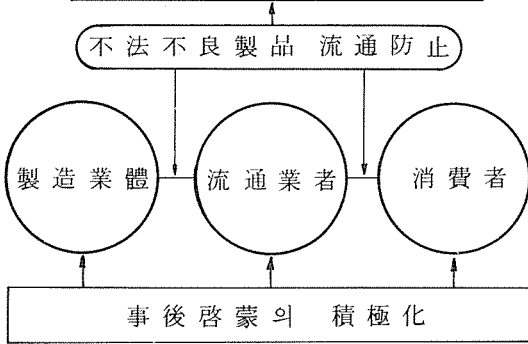
사후관리 지도계몽을 하고 있다.

이에 본會 會員業體에서도 不法不良工產品 추방에 적극 협조 바란다.

## 1. 不法不良製品 流通團束 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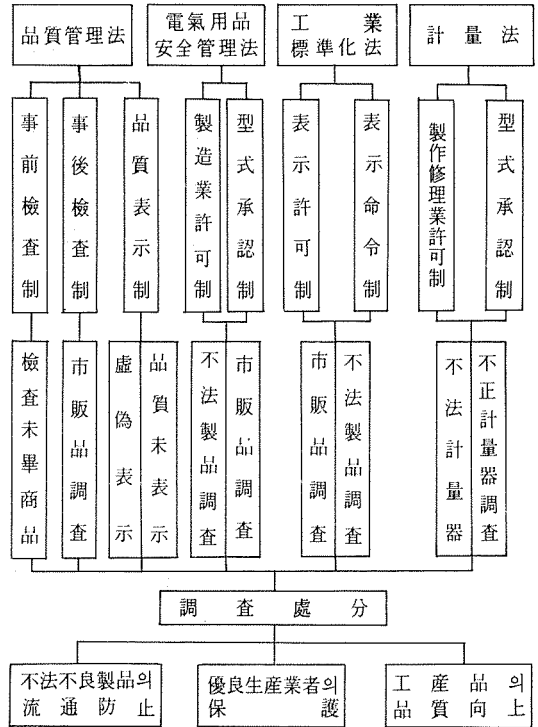
### 1. 目的

- 國產品에 대한 信賴性 提高
- 민고사는 商去來 風土 造成
- 消費生活의 安定性 · 信賴性 圖謀



## 3. 規制内容

## 2. 品質規制의 體系



區分	規制内容	罰則	
工業產品 品質管理法	事前檢查 (第6條)	○ 未畢商品 製造業體→告發 또는 收去破棄 ○ 未畢商品 販賣業體→收去, 破棄→告發	1年懲役 100萬원 罰金
	事後檢查 (第6條)	○ 不合格商品 製造業體→販賣 陳列禁止→收去, 被棄 및 告發	"
	品質表示 (第2條)	○ 未表示→表示命令→告發 ○ 虛偽表示→告發	"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製造業許可 (第4條)	○ 無許可 및 無承認製品, 製造 및 販賣業體→收去, 被棄 및 告發	2年懲役 500萬원 罰金
	및 型式承認 (第9條)	○ 承認條件 및 表示事項 違反 →告發 또는 許可取消	"
		○ 技術基準 未達→許可取消, 收去, 破棄 또는 告發	"

工業標準化法	表示許可 (第15條)	○ 不合格品 製造業體→注意警告, 表示變更, 表示停止, 販賣停止 또는 許可取消	1年懲役 500 萬원 罰金
	表示命令 (第15條)	○ 未表示 製造業體→告發 및 收去, 破棄 ○ 未表示 販賣業體→收去, 破棄→告發	"

4. 不法不良工產品 調查是正現況

(82. 10. 31 現在)

區 分	摘發件數	措 置 內 容				
		許可取消	生產中斷	告 發	收去破棄 表示命令	注意警 告 等
1. 規格表示商品	53		25	8	11	9
2. 檢查指定商品	2,229			450	1,779	
3. 品質表示商品	169				169	
4. 電 氣 用 品	141	52		34	8	47
計	2,592	52	25	492	1,967	56

5. 團束의 基本方向 및 方法

가. 基本方向

—先啓蒙 後 團束—

- 指導啓蒙 強化
- 優良生產業體 保護
- 團束地域의 廣域化
- 事後 管理制度 改善
- 常習 不法不良製品 製造 및 販賣業體 規制強化

나. 團束方法

○定期團束

- 團束班: 工振廳, 市道 檢查機關 合同.
- 對象品目: 生活品目, 兒童用品 素材部 品 不合格이 많은 品目
- 對象地域: 全國

○隨時團束

- 團束班: 廳, 檢查機關
- 對象品目: 定期團束時 除外品目 季節 商品.
- 特別이 團束이 要請되는 品目.

# 공지사항

## 사전검사기관 지정, 品質檢査 實施시기 및 검사수수료율 공고

工振廳에서는 지난 12月 1日 사전검사기관 지정, 品質檢査 實施시기 및 검사수수료율에 대한 공고를 工產品 品質管理法 시행령 제7조 및

同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工振廳告示 第 82~612호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였다.

### 1) 검사기관 및 대상지역

검 사 상 품	기 관 명 칭	소 재 지	관 할 지 역
전 기 면 도 기	전북 지방공업 시험소 전남 " " 한국 전기전자시험 검사소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전남 광주시서구 농성동30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3-17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국(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외)

### 2) 수수료

공장도 가격의 0.5%

(공고)의 규정에 의거 이를 工振庁 公告 제82-632호로 공고하였다.

### 3) 검사실시시기

① 1983. 1. 1 다만 검사실시일 이전이라도 검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할수있다.

4) 검사실시일 이전에 출고된 상품은 그 사실을 관할검사소에 신고하고 올해 신고확인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정시험기관 :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2. 지정 시험기관의 소재지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17

3. 대표자(소장)명 : 김 동 호

4. 지정구분

가. 전자응용 기계기구

나. 광원응용 기계기구

부칙 : 이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진청공고 제82-632號

工振庁은 지난 12月 10日 電氣用品 안전관리법 제16조(지정 시험기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同法 제26조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정구분의 電氣用品 型式承認 시험업무는 1983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